

『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6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7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7월 8일

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황 종 철

나. 제안이유

-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내용 개정 및 오탈자,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 세출에 관한 내용을 상위법인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과 일치토록 개정
- 조례 제3조 세입에 관한 내용을 근거법률 변경에 따른 개정 및 신설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조, 제33조, 제35조, 제36조, 제43조, 제49조
-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제15조
- 「주차장법」 제8조, 제9조, 제14조, 제19조, 제24조의2, 제30조
-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15조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88조, 제94조
-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1조, 제70조
- 「도로법」 제66조
- 「도로교통법」 제160조, 제161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○ 본 『구미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,

- 상위법인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,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정리, 오타자,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